

	학사학위취득유예규정	규정번호	3-4-16
		제정일자	2019.02.01.
		개정일자	2026.09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49조 6항에 의거,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학사학위(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)취득유예”라 함은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“학사학위취득유예자”(이하 “유예자”라 한다)는 학사학위취득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신청자격) 학사학위취득유예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.

제4조(유예기간)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시기) ① 최초 신청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신청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재신청은 학사학위취득유예된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신청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유예절차) ①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는 기말평가기간 중 학과에 사전 신청의사를 밝혀야 대학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에 접수 할 수 있다.

②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, 미신청시 졸업대상자로 처리한다.

③ 졸업사정회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에 대해 심의하여 승인을 한다.

제7조(유예조건) ①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.

②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유예자가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.

제8조(등록비용) ① 유예자의 등록비용에 대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②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 등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학위수여)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사정을 재심사하여 해당학기에 학칙 제49조 1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0조(취소) ① 정해진 시기에 등록하지 않은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이 취소되고,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.

②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. 다만 질병, 취업,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학업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은 취소 및 직전학기 수료자로 처리하고,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.

④ 다음 학기 개시 전 취소 승인 된 자는 해당학기 졸업자로 처리한다.

제11조(권리와 의무)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